

법학전문대학원 우수강의교원선정위원회 지침

시행일 : 2019. 03. 01.

제1조 (목적)

본 지침은 법학전문대학원 우수강의교원선정위원회(이하 위원회라 한다)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구성)

- ① 위원회는 대학원장, 교무부대학원장, 학생부대학원장 및 대학원장이 추천하는 교수 2인으로 구성한다.
- ② 대학원장이 위원장이 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대학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.

제3조 (우수강의교원선정기준)

위원회는 법학전문대학원 소속 전임교원 중에서 다음의 기준을 참작하여 우수강의교원을 선정한다.

1. 강의평가점수(50%)
2. 강의충실퇴(30%)
3. 기타(20%)

제4조 (시상)

우수강의교원은 학년도 말에 1회 선정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된 우수강의교원에게 상패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.

제5조 (기타)

우수강의 교원선정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지침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